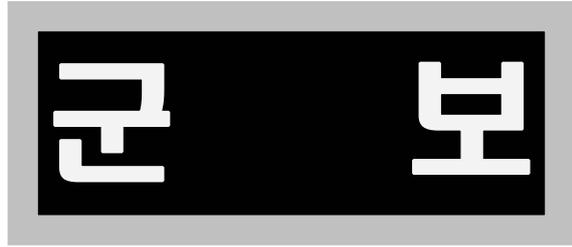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586호 2019. 10. 30(수)

【조 례】

- 고창군 조례 제2466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고창군 조례 제2467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고창군 조례 제2468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7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146호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10

【훈 령】

- 고창군 훈령 제465호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6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122호 심원면 지역역량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8
- 고창군 고시 제124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9
- 고창군 고시 제126호 고창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1
- 고창군 고시 제127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고시 23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1368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8
- 고창군 공고 제1369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3
- 고창군 공고 제1370호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고창군 공고 제1371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 고창군 공고 제1428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고창군 공고 제1442호 전자이미지 공인의 신조·폐기 공고 56
- 고창군 공고 제1448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상포) 97
- 고창군 공고 제144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후포) 98
- 고창군 공고 제1450호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사용개시 공고(심원도천) 99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66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목욕탕”을 “개장시간 및 휴장기간을 포함한 목욕탕”
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작은목욕탕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면 별	명 칭	위 치	비 고
무장면	무장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무장면 영선길 8-1	
공음면	공음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공음면 용덕로 632	
상하면	상하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상하면 명동2길 14	
해리면	해리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해리면 해리중앙로 130	
성송면	성송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성송면 대상로 763-8	
대산면	대산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대산면 시장길 19-2	
심원면	심원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심원면 연화1길 13-1	
홍덕면	홍덕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홍덕면 선운대로 3718-1	
성내면	성내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성내면 낙산로 433-9	
부안면	부안면 작은목욕탕	고창군 부안면 중흥서당길 34-17	

[별표 2]

작은목욕탕 이용 요금표

이 용 요 금 표		
구 분	금 액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장애인	무료	
국가유공자	무료	
노인	1,000원	65세 이상
미취학 아동	1,000원	
일반주민	2,000원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67 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상호저축은행과” 를 “상호저축은행,” 으로, “금고를” 을 “금고와 「산림조합법」의 산림조합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을 “보관·판매·환전·충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 을 “종류 및 권면금액”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류형 상품권 :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2. 전자상품권
- 3. 모바일 상품권

제6조제3항 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 를 “지정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맹점이 지정 계약” 을 “가맹점 지정”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한다.” 를 “하며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환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간 100만원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가 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수 있다” 를 “수 있고,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2. ----- ----- ----- 상호저축은행, ----- 금고와 「산림조합법」의 산림조합을 -----.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 보관 · 판매· 환전· 충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 종류 및 권면금액 ----- .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1. 지류형 상품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5천원권	2. 전자상품권
3. 1만원권	3. 모바일 상품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30일

고창군 조례 제 2468 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출장은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출장은 [별표 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지급기준표(제2조 제2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급 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	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2]

의 원 국 내 여 비 지급기준표(제3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별표 3]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제3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등급 35	가등급 223	가등급 107
		나등급 35	나등급 160	나등급 78
		다등급 35	다등급 130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85	라등급 49
의 원	2등 정액	가등급 30	가등급 176	가등급 81
		나등급 30	나등급 137	나등급 59
		다등급 30	다등급 106	다등급 44
		라등급 30	라등급 81	라등급 37

비 고 : 준비금(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은 실비로 한다.

[별표 4]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제4조 제2항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19년도	월 1,754,160원
2020년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1년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2년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30일

고창군 규칙 제 1146 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창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고창군과 고창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 대행, 환전 등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고창군과 판매대행점의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 만료일 전에도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일천원(1,000원)권,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고창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군 금고”에 보관하며, “군 금고”에서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과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그 밖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5%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고창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고창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전북 고창군 중앙로 245
성명 고창군수 (인)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고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창군이 발행하는 고창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고창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창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고창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제4호의1 또는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제6호의1 또는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1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또는 제8호의1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고창군수는 가맹점이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가맹점 지정 신청 수리일로부터 가맹점 계약해지일까지로 하며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고창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고창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 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신행 및 업무협조) ① 고창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고창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고창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창군

가맹점

상 호 :

주 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주 소 :

대표자 : 고창군수 (인)

대표자 : (인)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28일

고창군 훈령 제465호

고창군 소각시설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

제11조제1항 중 “수당과 여비를”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과 여비 등을”로 한다.

제2항 (생략)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본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적용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공론화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수당액	2시간	70,000 기본료
		매 초과 시간	30,000
	일일 상한액		250,000
제7조에 따른 참고인 등 수당		20,000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 “별표”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금액(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공론화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td> <td rowspan="2">수당액</td> <td>2시간</td> <td>70,000 기본료</td> </tr> <tr> <td>매 초과 시간</td> <td>30,000</td> </tr> <tr> <td colspan="2">일일 상한액</td> <td>250,000</td> </tr> <tr> <td colspan="2">제7조에 따른 참고인 등 수당</td> <td>20,000</td> <td></td> </tr> </tbody> </table> <p>※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구 분		금액(원)	비고	공론화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수당액	2시간	70,000 기본료	매 초과 시간	30,000	일일 상한액		250,000	제7조에 따른 참고인 등 수당		20,000	
구 분		금액(원)	비고															
공론화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수당액	2시간	70,000 기본료															
		매 초과 시간	30,000															
	일일 상한액		250,000															
제7조에 따른 참고인 등 수당		20,000																

고창군 고시 제2019-122호

심원면 지역역량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고 창 군 수

- 1. 사업명 : 심원면 지역역량개발사업
- 2. 목적 : 어촌의 특성에 따라 어촌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 모든 주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고창군 어촌을 만들기 위함
- 3.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35, 지방비 15)
-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일원
 - 면적 : 4,011ha
 - 가구·인구 : 1,427호, 인구 2,775명
 - 주요사업 : 역량강화, 거버넌스운영, 기타역량강화 등(※세부계획 참조)
-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어촌어항공단)
- 6. 사업시행기간 : 2019. 1. ~ 2019. 12.
- 7.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고창군청 해양수산물과 (☎ 063-560-2636)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27)

세 부 투 자 계 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역량 강화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20,000	- 전문적인 강사들로 전문적 역량 교육 및 계획형 역량강화 지원 - 포럼 현장조사, 선진견학 등
	거버넌스 운영	3,000	- 지역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거버넌스 구성 및 자체운영 - 각 구성원간 협력활동 도모 및 어촌 정화 활동
기타 역량 강화	리더워크샵	3,540	- 마을리더들의 토록식 교육을 통해 권역 발전방안을 스스로 모색하여 자생능력 제고
	리더위탁교육	5,000	- 마을 운영위원회 및 지역단체 등을 대상으로 마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 추진
기타 공사비	홍보비	400	- 현수막, X배너 등
	경비	3,680	- 조사비, 인쇄비 등
	설계비 등	14,380	-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고창군 고시 제2019 - 124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종합민원과-45499호(2019.10.14.)로 협의 의제 처리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4)와 체육청소년사업소(☎063-560-89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월암리 3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고창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3. 사업 면적 또는 규모
 - 군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254,654㎡, 변경 254,825㎡ (증171㎡)
 - 사업면적 : 부지면적 1,855㎡, 건축연면적 2,050.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고창군수,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련도서 : “계재생략”
9. 정정고시 : 고창군 고시 제2019-117호(2019.10.04.)로 고시한 사항 중 군 계획시설(주차장) 변경 후 면적을 14,581㎡에서 14,586㎡로 정정한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리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총 계				112,333	1,855	-	-	-
월암	1	316	체육용지	110,077	1,170	-	고창군	
월암	2	343	도로	228	54	-	고창군	
월암	3	344-1	도로	241	241	-	고창군	
월암	4	344-7	도로	995	225	-	고창군	
월암	5	347-1	도로	521	27	-	고창군	
월암	6	347-3	답	128	128	-	고창군	
월암	7	461-3	구	143	10	-	건설교통부	

고창군 고시 제2019-126호

고창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572) 및 건설도시과(☎063-560-25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3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창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 명 칭 : 고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A=3,815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창군수,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 따로 붙임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고창	고창	읍내	633-2	도	255	6	-	고창군			
2	고창	고창	읍내	633-3	도	46	12	-	고창군			
3	고창	고창	읍내	634-4	도	589	9	-	고창군			
4	고창	고창	읍내	634-10	대	69	69	-	고창군			
5	고창	고창	읍내	636-7	도	192	164	-	고창군			
6	고창	고창	읍내	636-8	대	106	106	-	고창군			
7	고창	고창	읍내	636-9	대	225	225	-	고창군			
8	고창	고창	읍내	636-10	대	350	350	-	고창군			
9	고창	고창	읍내	636-11	대	56	56	-	고창군			
10	고창	고창	읍내	636-12	대	56	56	-	고창군			
11	고창	고창	읍내	636-20	도	86	66	-	고창군			
12	고창	고창	읍내	636-21	대	215	215	-	고창군			
13	고창	고창	읍내	636-22	대	252	252	-	고창군			
14	고창	고창	읍내	863-61	대	132	132	-	고창군			
15	고창	고창	읍내	863-62	대	86	86	-	고창군			
16	고창	고창	읍내	863-63	하천	3	3	-	건설부			
17	고창	고창	읍내	863-64	대	136	136	-	고창군			
18	고창	고창	읍내	863-65	대	159	159	-	고창군			
19	고창	고창	읍내	863-66	대	162	162	-	고창군			
20	고창	고창	읍내	863-87	천	1,462	122	-	건설부			
21	고창	고창	읍내	863-80	대	139	139	-	고창군			
22	고창	고창	읍내	863-81	대	145	145	-	고창군			
23	고창	고창	읍내	863-82	대	307	307	-	고창군			
24	고창	고창	읍내	863-83	대	298	298	-	고창군			
25	고창	고창	읍내	863-84	대	169	169	-	고창군			
26	고창	고창	읍내	863-85	대	308	308	-	고창군			
27	고창	고창	읍내	863-184	하천	2,830	63	-	건설부			

고창군 고시 제2019-127호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고 창 군 수

2019년 10월 25일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고창 모양성 스마트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14,351 (마중물:14,167)	2019~2022년
	사업위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	사업면적	99,700㎡
사업 필요성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사회·문화적 쇠퇴양상 가속화로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이 시급			
사업내용 및 효과 재원조달방안	주거확충 및 정비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등 국비, 지방비, 자부담			
활성화계획도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

비전	“역사와 전통, 편리한 삶이 융합된 주민이 배우고 만들어가는 모양성 마을 郷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청년, 주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학교 ○ 고창읍성(모양성), 한옥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역사탐방 학교 ○ 주거지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지속가능한 삶을 창출하는 주거공간 학교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14,351	
	소계	14,271	
도시재생사업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6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위험 방지 3개소 ◦ 위험 옹벽 정비 2개소
	공용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조성	7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 1개소 (주차대수 8대) 설치 ◦ 도시계획도로 2개소 조성
	골목길 정비/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길 포장 3개소(127m) ◦ 쓰레기 분리수거장 6개소 설치
	노후주택정비/ 주거지 스마트 재생	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정비 ◦ CCTV 7개소, 보안등 10개소 설치
	모양성 역사길 경관정비	226	◦ 가로수 식재, 경관쉼터, 보도포장 등
	모양성마을 울력터 건립사업	5,011	◦ 부지면적 3,411㎡, 건축연면적 1,200㎡ (지하1층-지상2층)
	동문 연결 역사탐방로 정비사업 및 모양성 음식테마거리 조성	3,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문 연결 보행로 설치 및 마을 역사탐방로 정비 ◦ 음식테마거리 조성 (가판대 설치 9개소)
	골목형 전통담장 정비사업	640	◦ 노후화된 전통담장 정비 및 노후 콘크리트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교체하여 경관향상(L = 640m)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1,324	◦ 마을 내 공·폐가 리모델링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여 마을소득창출 (게스트 하우스 2채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283	◦ 음식테마거리, 게스트하우스 운영, 마을식당/주민카페, 마을공방 운영, 마을축제 운영사업
	마을소득창출 특화사업	286	◦ 주민조직 중심의 재생사업 추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경관 마스터플랜	670	◦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소계	80	
부처연계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80	◦ 행정안전부 연계사업 추진
	소계	800	(별도 사업으로 진행)
지자체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800	◦ 도시가스 배관망 신규조성

④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14,351	8,580	5,667	104	
	소계	14,271	8,500	5,667	104	
도시재생 사업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664	398.2	265.8	-	
	공용 주차장/도시계획도로 조성	774	464.4	309.6	-	
	골목길 정비/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325	195	130	-	
	노후주택정비/주거지 스마트 재생	560	312	208	40	
	모양성 역사길 경관정비	226	135.6	90.4	-	
	모양성마을 울력터 건립사업	5,011	3,006.6	2,004.4	-	
	동문 연결 역사탐방로 정비사업 및 모양성 음식테마거리 조성	3,508	2,104.8	1,403.2	-	
	골목형 전통담장 정비사업	640	345.6	230.4	64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1,324	794.4	529.6	-	
	주민역량 강화사업	283	169.8	113.2	-	
	마을소득창출 특화사업	286	171.6	114.4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경관 마스터플랜	670	402	268	-		
	소계	80	80	-	-	
부처 연계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80	80	-	-	
	소계	800	-	-	-	
지자체 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800	-	-	-	

⑤ 예산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합계	2019년 (1년차)	2020년 (2년차)	2021년 (3년차)	2022년 (4년차)	비고	
합 계		14,271	810	4,711	4,112	4,638		
도시 재생 사업	생활편익 시설 설치 분야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664	-	664	-	-	
		공용주차장/도시계획도로 조성	774	-	-	774	-	
		골목길정비/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325	-	-	-	325	
		노후주택정비/주거지 스마트 재생	560	-	160	400	-	
		모양성 역사길 경관정비	226	-	226	-	-	
	거점개발 확보 분야	모양성마을 울력터 건립사업	5,011	583	3,428	1,000	-	
		동문 연결 역사탐방로 정비사업 및 모양성 음식테마거리 조성	3,508	-	-	107	3,401	
		골목형 전통담장 정비사업	640	-	-	640	-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1,324	-	-	586	738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분야	주민역량 강화사업	283	4	86	120	73	
		마을소득창출 특화사업	286	23	47	115	101	
	사업준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경관 마스터플랜	670	200	100	370	-	

※ 사업계획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성과관리지표 설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효과 판단을 위해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평가·모니터링 실시
- 성과관리방안은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에서 수립한 계획의 실행실적 및 질적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 사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차별 성과관리 분석을 실시하며 방법은 설문조사, 현장조사, 계측조사, 통계조사 등을 통해 실시

분야/ 목표	지표항목		목표치		
			현재 (2019년)	사업종료시점 (2022년)	비고
거점개발 확보	모양성마을 울력터건립	연간 이용객수	0명	18,000명	
	동문 연결 역사탐방로 정비사업 및 모양성 음식 테마거리 조성	연간 이용객수	0명	32,000명	
	골목형 전통담장 정비 사업	연간 이용객수	0명	7,200명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연간 이용객수	0명	1,200명	
기반시설 확충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산사태 위험 방지 / 위험옹벽 개소	3개소/ 2개소	0개소/ 0개소	3개 감소/ 2개소 감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구간수	0구간	2구간	2구간 증가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	개소	0개소	1개소	8면
	골목길 정비사업	정비 구간	L=0m	L=177m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장 개소	0개소	6개소	
생활 편익시설 설치	주거지 스마트 재생사업	CCTV 개소/ 보안등 개소	1개소/ 0개소	7개소/ 10개소	6개소 증가/ 10개소 증가
	노후주택 정비사업	정비 주택 개소	0개소	50개소	
	모양성 역사길 경관정비	정비 구간	L=0m	L=400m	400m 증가
역량강화	4개 사업	참여인원수(연간)	0명	9,600명	

□ 모니터링 방안 및 환류체계 구축

-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모니터링 및 자체 연구를 통해 평가를 추진하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해 연차별 종합평가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지속성 평가
- 모니터링은 매해 고창군과 고창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⑦ 관련서류 열람

- 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7)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368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인구(7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교통안전교육의 종류에 대해 규정함
: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 : 안 제5조 ~ 안 제6조
 -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지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상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5.~ 2019. 11. 4.(21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하는 곳

- (우) 56428/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 063-560-2571, Fax 560-236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063-560-2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상생경제과장

1. 제정이유

-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인구(7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교통안전교육 종류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나. 예산수반여부 : 여
- 다. 입법예고(2019. . . ~ 2019. . .) 결과 :
- 라. 규제심사 :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369 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5.

고 창 군 수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대상 변경(제2조)

현행	개정안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상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상생경제과(전화 063-560-2571, FAX 063-560-236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문의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전화 063-560-25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상생경제과장

1. 제정이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도 변경하고자 함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종류
 - 용달, 개별, 일반(최대적재량 기준) ⇨ 개인, 일반(차량대수 기준)

2. 주요내용

-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대상 변경(제2조)

현행	개정안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예산수반여부 : 부
- 다. 입법예고(2019. . . ~ 2019. . .) 결과 :
- 라. 규제심사 :

4. 따로붙임

-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 중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를 추가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를 “제2조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p>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p>	<p>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에서 위임한 ----- ----- ----- -----</p> <p>제2조(적용대상)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 ----- 2. <u>삭제</u> 3. <u>삭제</u> <p><추가> <u>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u>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u>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u>을 영위하는 <u>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u></p> <p>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①<u>제2조의-</u> ----- ----- ----- -----</p>

고창군 공고 제2019-1370호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군계획조례 반영으로 군민들에게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고창군 전반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 연장
(안 제60조의2제2항)
- 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규제 개선(안 별표22)
- 다. [별표26] 중 제1호의1)의 이격거리 50% 완화 기준 변경(안 별표26)
- 라. [별표26] 중 제1호의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마. [별표26] 중 제1호의4), 우량농지 내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바. [별표26] 의 용어 및 문구 수정(안 별표26)

3. 의견제출

고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전화 : 063-560-2564 FAX : 063-560-25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담당자

전제민(전화:063-560-25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과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 연장
(안 제60조의2제2항)
- 나.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규제 개선(안 별표22)
- 다. [별표26] 중 제1호의1)의 이격거리 50% 완화 기준 변경(안 별표26)
- 라. [별표26] 중 제1호의3), 건축물 상부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마. [별표26] 중 제1호의4), 우량농지 내 발전시설 기준 변경(안 별표26)
- 바. [별표26] 의 용어 및 문구 수정(안 별표2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수반여부 : 없음
- 다. 입법예고(2019. 10. 15. ~ 2019. 11. 4.)
- 라. 규제심사 : 예정

4. 따로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2016년” 을 “2020년” 으로 한다.

[별표 22] 중 제2호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 한다)에
다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6]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별표 26] 중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이상” 을 삭제한다.

[별표 26] 중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이격거리 이내의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6]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폐차장 및 고물상 이격거리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별표 26] 중 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이상” 을 삭제한다.

[별표 26] 중 제1호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주민등록상)를 두고, 5년 이상
신청토지를 소유한 자가 발전용량 5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제1호사목은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단, 발전용량을 합
산하여 500kW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부부 및 직계 존비속에 해당
될 경우에는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완화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6] 중 제1호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물 상부
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단, 준공일로부터 신청일 까지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
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26] 중 제1호의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우량농지 내에 발전시설(자가소비용은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별표 26] 중 제1호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말한다.(단,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2제2호나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II.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대한 규제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도시과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이종연 담 당 : 지방시설주사 김경진 작성자 : 지방시설서기 전제민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 기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축물 상부 판매용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자	-	-	-		
	이 해 관 계 자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존속기한 설정대상 아님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내용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별표 26) ⇒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 규제사항 마련 -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신청일 까지 건축물 용도에 맞는 시설로 사용한 경우 에만 허용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고창군계획조례)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가가 쉬운 동식물관련시설 등으로 허가 후 판매용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 주민과의 마찰 발생 및 조례 무력화

나. 문제발생의 원인

-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회피 수단으로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후 판매용 발전시설 설치하고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판매용 발전시설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실제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고창군계획조례를 회피할 목적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규제의 목표설정

- 건축물 용도에 맞도록 사용 유도 및 소득 창출 일원으로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건축물 상부에 대한 규제로 이해관계인들의 반대가 예상됨.

나.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허가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절성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규제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규제의 일정기간 추진 후 상위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음

고창군 공고 제2019-1371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경영이 어려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 신설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사목)
 - 경영이 어려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인건비(대표원) 지원

3. 의견제출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상생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전화 : 063-560-2573 / 팩스 : 063-560-236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터미널업무 담당자(☎ 063-560-25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상생경제과장

1. 개정이유

-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노후 농어촌버스 대체 보조금의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
- 경영이 어려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인건비(매표원) 지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나. 예산수반여부 : 여
- 다. 입법예고(2019. 10. 15. ~ 2019. 11. 04.)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따로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사목을 신설하여 “경영이 어려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인건비(대표원) 지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조금 지원)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p> <p style="margin-left: 20px;">가.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p> <p style="margin-left: 20px;">나. 시간표 및 노선도 제작 보급</p> <p style="margin-left: 20px;">다. 택시요금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p> <p style="margin-left: 20px;">라. 여객자동차터미널(정류장) 유지관리</p> <p style="margin-left: 20px;">마. 택시 교통사고 발생 감소 등 안전성 향상 장비 지원</p> <p style="margin-left: 20px;">바.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p>	<p>제3조(보조금 지원) -----</p> <p>-----</p> <p>-----</p> <p>-----</p> <p>-----</p> <p>-----</p> <p>-----</p> <p>-----</p> <p>1. (생략)</p> <p>2. -----</p> <p>-----</p> <p>-----</p> <p>-----</p> <p>가. -----</p> <p>나. -----</p> <p>다. -----</p> <p>라. -----</p> <p>마. -----</p> <p>바. -----</p> <p>사. <u>경영이 어려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인건비(매표원) 지원</u></p>

고창군 공고 제2019 - 1428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마을이장 선출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마을화합을 저해하고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 공정하고 투명한 마을이장 선출을 통해 마을주민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개발위원회 명칭을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제4항)
- 이장의 교체사유 추가 및 교체된 이장의 선거참여 제한기간 신설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
-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 구성(안 제22조 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울력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곳 : 우 585-700/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고창군 울력행정과 울력행정팀

(전화 063-560-2315 FAX 063-560-233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울력행정과 울력행정팀(전화 063-560-2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 .

제 출 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울력행정과장

1. 개정이유

- 마을이장 선출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부재로 마을화합을 저해하고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 공정하고 투명한 마을이장 선출을 통해 마을주민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개발위원회 명칭을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로 변경 (안 제3조 제4항)
- 이장의 교체사유 추가 및 교체된 이장의 선거참여 제한기간 신설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
-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 구성(안 제22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 나. 입법예고 (2019. 10. . ~ 2019. 11. .) 결과 :
- 다. 규제심사 결과 :
-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4. 따로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향토개발”을 “지역개발”로, “새마을개발위원회”를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를 신설하고, 제6호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한다.

- 3.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 될 때
- 4. 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 유용이 확인될 때

- 5. 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
 - 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교체된 이장은 향후 5년간 이장 후보자로 나올 수 없다.
-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2항 “자가”을 “사람이”,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5조 제5호 “새마을사업”을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새마을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민방위대장·예비군소대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4-h회장·자연보호회장·영농회장·홍농계장·산림계장·어촌계장·새마을금고이사장·마을문고회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어촌계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제8호 “각 부의 대표자가”를 “마을 주민 다수가”로 한다.

제25조 제1항 “회무를 통리하고”를 “위원회를 총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하부조직) ① · ② · ③ (생 략) ④ ----- <u>향토개발을-----새마을</u> <u>개발위원회---</u>.</p> <p>제10조(이장의 교체)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 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 · 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1. 2. (생 략)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u>태만</u>히 한 때 <신 설></p> <p>제14조(반장의 위촉) ① (생 략) 1. (생 략) 2. -----<u>자</u> 3. -----<u>자</u> ② -----<u>자</u> <u>가</u>-----<u>자</u>를-----. ③ (생 략)</p>	<p>제3조(하부조직) ①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지역개발을-----마을가</u> <u>꾸기 자치위원회---</u>.</p> <p>제10조(이장의 교체)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 3. <u>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를</u> <u>위반하여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u> <u>이 확인될 때</u> 4. <u>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 유용</u> <u>이 확인될 때</u> 5. <u>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u> <u>가 확인될 때</u> 6. ----- <u>게을리</u> 한 -----</p> <p>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교체된 이장은 향후 5년간 이장 후보자로 나올 수 없다.</p> <p>제14조(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u>사람</u> 3. -----<u>사람</u> ② -----<u>사람</u> <u>이</u>-----<u>사람</u>을-----. ③ (현행과 같음)</p>

제15조(임무)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5.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지원

제4장 새마을 개발위원회

제22조(구성) ①새마을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민방위대장·예비군소대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4-h회장·자연보호회장·영농회장·홍농계장·산림계장·어촌계장·새마을금고이사장·마을문고회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④ (생략)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 7. (생략)
- 8. ---각 부의 대표자가 ---

제2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임무) -----

5.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협조·지원

제4장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

제22조(구성) ①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어촌계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삭제)

제24조(기능) -----
-----.

- 1. ~ 7. (현행과 같음)
- 8. ---마을주민 다수가---

제25조(위원장) ① -----위원회를 총괄-----
-----.

고창군 공고 제2019 - 1442호**전자이미지 공인의 신조 공고**

고창군 공인조례 제9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동 조례 제8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고 창 군 수

1. 공인의 신조 사유 : 고창군 공인 글자체 변경
◎ 한글전서체에서 판소리 춘향가체로 변경
2. 공인 신조 일자 : 2019. 11. 6.
3. 공고기간 : 2019. 10. 30. ~ 2019. 11. 5. [7일간]
4. 등록 공인 수 : 101점

전자이미지 공인 신조 내역

□ 전자 이미지 공인(101점) 인영부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고 창 군 수 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의료급여종합지원정보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고 창 군 수 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일반용)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고 창 군 수 인		바른땅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환경행정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지방세정보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온-나라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고 창 군 수 인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고 창 군 과 인 총 합 민 원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일반용)
고 창 군 지 인 공 유 토 분 할 위 원 회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용)
고 창 군 사 인 지 적 창 재 조 위 원 회		서울행정시스템 (토지,임야대장전용)
고 창 군 정 인 경 계 결 위 원 회		서울행정시스템 (민원24용)
고 창 군 과 인 생 태 환 경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부동산종합공부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사 법 경 찰 관 직 무 취 급 자 인		부동산종합공부(정부24용)
사 법 경 찰 관 직 무 취 급 자 인		세움터
고 창 군 과 산 립 공 원 인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렌트홈
고 창 군 과 재 무 인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온-나라시스템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온-나라시스템
고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온-나라시스템
고 창 군 체 육 청 소 년 사 업 소 장 인		온-나라시스템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인		온-나라시스템
고창군환경시설사업소장인		온-나라시스템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농업교육포털시스템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인		상수도정보 관리시스템
고 창 읍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고 수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아 산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무 장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 음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상 하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해 리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성 송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 산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심 원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홍 덕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성 내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신 림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 안 면 장 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고 창 읍 장 인		온-나라시스템
고 수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아 산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무 장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공 음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상 하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해 리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성 송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대 산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심 원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홍 덕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성 내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신 립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부 안 면 장 인		온-나라시스템
고 창 읍 장 인		서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고 수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고 수 면 장 인 민 수 원 실 전 용		새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고 수 면 장 인 민 수 원 실 전 용		새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아 산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아 산 면 장 인 민 수 원 실 전 용		새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아 산 면 장 인 민 수 원 실 전 용		새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무 장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무 민	장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무 민	장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공 민	공 원	면 면	면 면	장 인		서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공 민	공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공 민	공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상 민	상 하	면 면	면 면	장 인		서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상 민	상 하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상 민 하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새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해 리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해 민 리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새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해 민 리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새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성 송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성 민 송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새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성 민 송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새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대 산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대 산 면 장 인 용 민 원 실 전		새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대 산 면 장 인 용 민 원 실 전		새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심 원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심 원 면 장 인 용 민 원 실 전		새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심 원 면 장 인 용 민 원 실 전		새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흥 덕 면 장 인		새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홍 덕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홍 덕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성 내 면 장 인		서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성 내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성 내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신 림 면 장 인		서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신 림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등록공인 [신조]		
공인명	인 영	시스템명
신 민 립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부 안 면 장 인		서울행정시스템 (사무용-일반용)
부 민 안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농지원부-무인민원)
부 민 안 원 면 실 장 전 인 용		서울행정시스템 (민원용-무인민원)

고창군 공고 제2019 - 1442호**공인의 신조 · 폐기 공고**

고창군 공인조례 제9조(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동 조례 제8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고 창 군 수

1. 공인의 신조 및 폐기사유 : 고창군 공인 글자체 변경

◎ 한글전서체에서 판소리 춘향가체로 변경

2. 공인 신조 및 폐기 일자 : 2019. 11. 6.

◎ 통합민원발급기 및 인증기용 공인은 일시에 교체가 불가하여
'19.11.6~11.15.까지 전서체 공인과 판소리 춘향가체 공인을 함께 사용

3. 공고기간 : 2019. 10. 30. ~ 2019. 11. 5. [7일간]

4. 폐기 공인 수 : 160점 (직인 118점, 인증기 36점, 통합민원발급기 6점)

5. 등록 공인 수 : 160점 (직인 118점, 인증기 36점, 통합민원발급기 6점)

공인 신조 및 폐기 내역

□ 일반직인(118점) 인영부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고 창 군 농생명지원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벽조목	농생명지원과 일상경비출납 원		1.8×1.8	인조
고 창 군 농어촌식품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농어촌식품과 일상경비출납 원		1.8×1.8	인조
고 창 군 해양수산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해양수산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흑각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자인		1.8×1.8	벽조목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1.8×1.8	목조
고 창 군 축산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축산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목각
고 창 군 상생경제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상생경제과 일상경비출납 원 인		1.8×1.8	인조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 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 m)	재질
고 창 군 재 난 안 전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재 난 안 전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흑인조
고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운 용 일 상 경 비 출 납 공 무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운 용 일 상 경 비 출 납 공 무 원 인		1.8×1.8	흑각
고 창 군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장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장 인		2.7×2.7	흑인조
고 창 군 통 합 방 위 협 의 회 의 장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통 합 방 위 협 의 회 의 장 인		2.7×2.7	흑인조
고 창 군 건 설 도 시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건 설 도 시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흑인조
고 창 군 문 화 예 술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문 화 예 술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인조
고 창 군 문 화 유 산 관 광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문 화 유 산 관 광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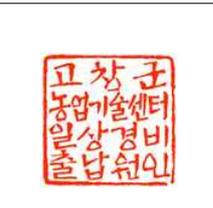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사 회 복 지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사 회 복 지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1.8×1.8	인조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3.0×3.0	청동 합금	고 창 군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3.0×3.0	흑각
고 창 군 종 합 민 원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종 합 민 원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목각
고 창 군 공 유 토 지 분 할 위 원 회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공 유 토 지 분 할 위 원 회 인		2.7×2.7	별각
고 창 군 지 적 재 조 사 위 원 회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지 적 재 조 사 위 원 회 인		2.7×2.7	별각
고 창 군 경 계 결 정 위 원 회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경 계 결 정 위 원 회 인		2.7×2.7	별각
고 창 군 생 태 환 경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생 태 환 경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인조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사 법 경 찰 관 직 무 취 급 자 인		1.8×1.8	벽조목	사 법 경 찰 관 직 무 취 급 자 의 인		1.8×1.8	인조
사 법 경 찰 관 직 무 취 급 자 인		1.8×1.8	벽조목	사 법 경 찰 관 직 무 취 급 자 의 인		1.8×1.8	목각
고 창 군 산 립 공 원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산 립 공 원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목각
고 창 군 재 무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재 무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흑인조
고 창 군 세 입 징 수 관 인		2.0×2.0	벽조목	고 창 군 세 입 징 수 관 인		2.0×2.0	목각
고 창 군 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1.8×1.8	목각
고 창 군 수 입 금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수 입 금 출 납 원 인		1.8×1.8	목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창군 재무관인		2.0×2.0	벽조목	고창군 재무관인		2.0×2.0	흑각
고창군 지출원인		2.0×2.0	벽조목	고창군 지출원인		2.0×2.0	목각
고창군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원인		1.8×1.8	벽조목	고창군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원인		1.8×1.8	목각
고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8×1.8	목각
고창군 분임재무관인		2.0×2.0	벽조목	고창군 분임재무관의인		2.0×2.0	흑인 조
고창군 분인지출관인		2.0×2.0	벽조목	고창군 분인지출관의인		2.0×2.0	흑인 조
고창군 물품관리관인		2.0×2.0	벽조목	고창군 물품관리관인		2.0×2.0	목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물 품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물 품 출 납 원 인		1.8×1.8	목각
고 창 군 수 인		3.0×3.0	청동합금	고 창 군 수 인		3.0×3.0	흑각
고 창 군 인 사 위 원 회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인 사 위 원 회 인		2.7×2.7	흑각
전라북도지사의인 고 창 군 수 전 용		2.7×2.7	벽조목	전라북도지사의인 고 창 군 수 전 용		2.7×2.7	흑인조
고 창 군 울 력 행 정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울 력 행 정 과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인조
고 창 군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1.8×1.8	인조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2.7×2.7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고수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고수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아산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아산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무장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무장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공음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공음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해리통합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해 리 통 합 보 건 지 소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성송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성송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대산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대산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심원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심원면보건지소장인		2.7×2.7	흑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흥덕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흥덕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성내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성내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신림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신림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보 건 소 장 인 부안면보건지소전용		2.7×2.7	벽조목	고 창 군 부안면보건지소장인		2.7×2.7	목각
고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2.7×2.7	벽조목	고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창군 체육청소년 사업소장인		2.7×2.7	벽조목	고창군 체육청소년 사업소장인		2.7×2.7	흑인조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인조
고창군 상하수도 사업소장인		2.7×2.7	벽조목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인		2.7×2.7	흑각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고창군 환경시설 사업소장인		2.7×2.7	벽조목	고창군 환경시설 사업소장인		2.7×2.7	흑인조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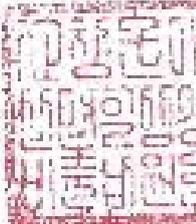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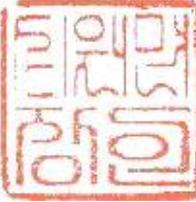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읍 장 인		2.7×2.7	벽조목	고 창 읍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고 창 읍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고 창 읍 장 전 용		3.0×3.0	흑각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읍 고 창 읍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읍 고 창 읍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고 수 면 장 인		2.7×2.7	벽조목	고 수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고 수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고 수 면 장 전 용		3.0×3.0	흑각
고 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고 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고 수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고 수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아 산 면 장 인		2.7×2.7	벽조목	아 산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아 산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아 산 면 장 전 용		3.0×3.0	흑각
아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아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아 산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아 산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무 장 면 장 인		2.7×2.7	벽조목	무 장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무 장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무 장 면 장 전 용		3.0×3.0	흑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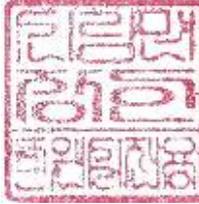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무 장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무 장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무 장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무 장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공 음 면 면 장 인		2.7×2.7	벽조목	공 음 면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공 음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공 음 면 장 전 용		3.0×3.0	흑각
공 음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공 음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공 음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공 음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상 하 면 면 장 인		2.7×2.7	벽조목	상 하 면 장 인		2.7×2.7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수 인 상 하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상 하 면 장 전 용		3.0×3.0	흑각
상 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상 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상 하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상 하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해 리 면 장 인		2.7×2.7	벽조목	해 리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해 리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해 리 면 장 전 용		3.0×3.0	흑각
해 리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해 리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해 리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해 리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성 송 면 장 인		2.7×2.7	벽조목	성 송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성 송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성 송 면 장 전 용		3.0×3.0	흑각
성 송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성 송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성 송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성 송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대 산 면 장 인		2.7×2.7	벽조목	대 산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대 산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대 산 면 장 전 용		3.0×3.0	흑각
대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대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대 산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대 산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심 원 면 장 인		2.7×2.7	벽조목	심 원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심 원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심 원 면 장 전 용		3.0×3.0	흑각
심 원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심 원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심 원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심 원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홍 덕 면 장 인		2.7×2.7	벽조목	홍 덕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홍 덕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홍 덕 면 장 전 용		3.0×3.0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홍 덕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홍 덕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홍 덕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홍 덕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성 내 면 장 인		2.7×2.7	벽조목	성 내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성 내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성 내 면 장 전 용		3.0×3.0	흑각
성 내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성 내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성 내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성 내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신 립 면 장 인		2.7×2.7	벽조목	신 립 면 장 인		2.7×2.7	흑각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 창 군 수 인 신 립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신 립 면 장 전 용		3.0×3.0	흑각
신 립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신 립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신 립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신 립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부 안 면 장 인		2.7×2.7	벽조목	부 안 면 장 인		2.7×2.7	흑각
고 창 군 수 인 부 안 면 장 전 용		3.0×3.0	벽조목	고 창 군 수 인 부 안 면 장 전 용		3.0×3.0	흑각
부 안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벽조목	부 안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흑각
고 창 군 부 안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벽조목	고 창 군 부 안 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흑각

□ 인 증 기(36점)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고창군수인 민원실전용		3.0×3.0	NBR (특수고무)	고창군수인 민원실전용		3.0×3.0	NBR (특수고무)
고창군수인 민원실전용		3.0×3.0	NBR (특수고무)	고창군수인 민원실전용		3.0×3.0	NBR (특수고무)
고창군수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전용		3.0×3.0	NBR (특수고무)	고창군수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전용		3.0×3.0	NBR (특수고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농기계임대전용		2.7×2.7	NBR (특수고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농기계임대사업1		2.7×2.7	NBR (특수고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해리농기계임대전용		2.7×2.7	NBR (특수고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농기계임대사업2		2.7×2.7	NBR (특수고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미생물배양장전용		2.7×2.7	NBR (특수고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미생물배양장전용		2.7×2.7	NBR (특수고무)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고 창 군 수 인 고 창 읍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고 창 읍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고 창 읍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고 창 읍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읍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고 수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고 수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아 산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아 산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아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아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고 창 군 수 인 무 장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과)	고 창 군 수 인 무 장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과)
무 장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무 장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고 창 군 수 인 공 음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과)	고 창 군 수 인 공 음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과)
공 음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공 음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고 창 군 수 인 상 하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과)	고 창 군 수 인 상 하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과)
상 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상 하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과)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고 창 군 수 인 해 리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해 리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해 리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해 리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성 송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성 송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성 송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성 송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대 산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대 산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대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대 산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심 원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심 원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심 원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심 원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홍 덕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홍 덕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홍 덕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홍 덕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성 내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성 내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성 내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성 내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신 립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신 립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신 립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신 립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고 창 군 수 인 부 안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고 창 군 수 인 부 안 면 장 전 용		3.0×3.0	NBR (특수고무)
부 안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부 안 면 장 인 민 원 실 전 용		2.7×2.7	NBR (특수고무)

□ **통합증명발급기(6점)**

등록공인 [신조]				폐기공인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공인명	인 영	규격 (cm)	재질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종 직 인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형 직 인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종 직 인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형 직 인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종 직 인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형 직 인		3.0×3.0	우레탄	고 창 군 수 인 민 원 실 전 용 (통합증명발급기)		3.0×3.0	우레탄

고창군 공고 제2019 - 제1448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상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사용개시 년월일

- 2019년 10월 30일

2. 배수구역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수암리 일원

3.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위치

- 상포 공공하수처리시설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암리 1568-1

4.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및 분류식 분류

- 관계 도면참조

5.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구분		BOD	COD	SS	T-N	T-P
상포	유입수질	170	110	140	40	4.0
	설계수질	4	8	4	8	0.6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 시설용량 : 50m³/일
- 처리공법 : FNR공법
- 방류수역 : 서해

6.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 정비계획

- 하수배제계획 : 분류식(관계도면참조)
- 하수관거 정비계획 : 고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같음.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기타사항

- 관계도면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560-8991)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1449 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사용개시 년월일

- 2019년 10월 30일

2. 배수구역

- 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신덕리 일원

3.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위치

- 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 전북 고창군 신덕리 782번지

4. 사용개시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및 분류식 분류

- 관계 도면참조

5.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구분		BOD	COD	SS	T-N	T-P
후포	유입수질	170	110	140	40	4.0
	설계수질	4	8	4	8	0.6
	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0이하	20이하	2이하

- 시설용량 : 120m³/일
- 처리공법 : FNR공법
- 방류수역 : 서해

6.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 정비계획

- 하수배제계획 : 분류식(관계도면참조)
- 하수관거 정비계획 : 고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같음.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기타사항

- 관계도면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560-8991)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공고 제2019 - 제1450호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사용개시 년월일

- 2019년 10월 30일

2. 사용개시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위치

- 전북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고전리, 주산리 일원

3. 사용개시내용

시설물명		형 식 및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오수관	압송관로	내충격PVC관, ∅75mm	m	2,590.0	
	오수관로	PE이중벽관, ∅200mm	m	8,154.0	
	계		m	10,744.0	
배수설비			가구	209	
오수맨홀		∅900mm	개소	265	
		∅1200mm		5	
맨홀펌프장		개소	개소	9	

6.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요

- 처리구역 : 심원처리구역 (0.356km²)
- 유입장소 : 심원 공공하수처리시설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기타사항

-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5조 및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560-89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